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제5항).
- 상인연합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(支會)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제6항, 제7항 신설).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제9항 신설, 제10항).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제11항 신설).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의3 신설).

-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1조제2항).
- 상인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72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 제72조제2항은 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,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고¹⁾ 연합회에 대한 처벌규정 외에 연합회의 회장이나 이사, 직원, 대리인 등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²⁾. 이러한 규정은 법인에 대한 처벌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먼저 두고 양벌규정을 두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.
- 다만, 이 개정안이 입법례로 삼고 있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소상공인법”) 제29조제2항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법령이

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법”) 제66조(상인연합회) ① 상인회, 상점가 진흥조합,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·조합·단체 및 「상법」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2) 전통시장법 제66조(상인연합회)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나 정관에 위반되는 회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명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, 양벌규정 없이 직접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⁾⁴⁾. 그러나 소상공인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합회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⁵⁾, 소상공인법 제29조제2항을 개정할 당시 선례로 삼았던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33조제1항 및 제140조는 법인인 연합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연합회 등의 임원만을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⁾⁷⁾.

- 따라서 제72조제2항에서는 연합회의 회장이나 이사 등 의무를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, 양벌규정인 현행 제73조에 따라 연합회에도 같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.

3) 소상공인법 제29조(벌칙)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) 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4.17.) 소위자료(p.81)의 내용을 근거로 함.

5) 소상공인법 제27조(행정명령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6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33조(행정명령) ①주무관청이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
2.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
3. 설립인가일부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
4.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(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

제140조(벌칙)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) 제329회국회(정기회) 제3차 산업통상자원소위(2014.11.20.) 회의록(p.62) 논의를 근거로 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<신 설> 제66조(상인연합회) ⑪ <u>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	제66조(상인연합회) ⑪ <u>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
<신 설> 제72조(벌칙) ② <u>연합회가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	제72조(벌칙) ② <u>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</u> 지는 <u>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
<현 행> 제7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7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전문위원 이 은 정)